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1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4월 26일

발 의 자: 김태수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 김용일, 김재진, 김종길, 김혜영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성연, 서상열, 서호연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윤영희, 이민석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 이효원, 장태용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호정, 허훈, 홍국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.
- 이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홍보 및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임차와 법률상담지원 및 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함.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

8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

제20조제2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

11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주거복지센터의 기능) ① 중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0. (생략)</p>	<p>제20조(주거복지센터의 기능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</u></p> <p>8. <u>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</u></p> <p>9.·10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</u></p> <p>11. <u>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</u></p> <p>12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